

서울고등법원 2021. 11. 3 선고 2021나202624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중민

피고, 피항소인 경상북도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정성운

변 론 종 결 2021. 10. 13.

판 결 선 고 2021. 11. 3.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3. 선고 2020가합607551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44,120,3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관련 법률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7면 각주 1)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모두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기판력 저촉 여부

1) 전후 양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을 소송물로 삼았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 것이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3다52488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4014 판결 등 참조). 한편, 판결확정 후에 그 판결의 전제가 된 법률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전소 확정판결의 효력을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28017 판결, 1993. 4. 27. 선고 92누9777 판결 등 참조), 기판력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효과는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에 의하여 다시 이를 다룰 수 있으나, 판결확정 후에 그 판결의 전제가 된 법률에 관한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1헌바231 결정 등 참조).

2) 피고가 이 사건 학교용지의 원시취득자임을 전제로 원고를 상대로 그 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학교용지 대금채권의 양수인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학교용지의 취득대금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에 따라 그 취득대가로서 이 사건 학교용지의 조성원가 상당인

1,728,983,62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후 이미 지급한 17억 원을 원리금에 충당하고 남은 잔금을 지급하라는 선행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법률 부칙 제2조가 위헌이므로 이 사건 학교용지의 정당한 취득대가인 감정평가액 5,473,104,000원에서 위 조성원가 상당액인 1,728,983,626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구하는 것인바, 결국 이는 이 사건 학교용지의 취득대금을 조성원가로 산정하여 피고에게 조성원가 상당인 1,728,983,626원에서 이미 지급한 17억 원을 원리금에 충당하고 남은 잔금을 지급할 것을 명한 선행판결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사건 청구는 당사자가 동일하고 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도 동일한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정면으로 모순된 법률관계를 주장하는 것으로, 전소에서 기판력이 발생한 주문과 모순된 주장을 하는 것이어서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으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가정적 판단

나아가 설령 원고의 청구가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법률 부칙 제2조가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의 위헌 여부

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는 ‘학교교지는 유상으로 한다’고만 규정할 뿐, 학교교지의 대가 산정 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의 전체적인 입법취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목적과 본질 등에 비추어 학교교지 취득대금은 개발이익이 발생하기 전인 사업시행 전 토지가격에 학교교지의 조성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이 해석 가능하므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는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사업시행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학교교지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가 국가에 귀속되는 대신 환지된 토지의 효용가치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므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유상’의 의미가 그 증가된 효용가치가 배제된 해당 토지의 취득가격에 학교교지의 조성비용을 더한 금액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생긴 학교교지의 경우,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그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하면서 그에 대한 취득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국가 등이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적기에 적절한 학교교지를 확보하여 공공시설의 효용을 유지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공공용지 중 학교교지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한 취지는 국가 등이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학교시설 등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무상으로 국가 등에 귀속시키게 되면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감보율이 지나치게 커지게 되어 토지소유자들이 불이익을 입을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인 점,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의 정비 역시 주요한 사업 목적으로 삼고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은 학교교지를 포함한 공공용지로 인하여 환지가 감보되지만 이러한 감보는 구획정리사업 결과 대지의 효용이 증가하여 환지 가격이 증가하는 것, 즉 개발이익에 의하여 보상되는 점, 단순히 개발이익이 발생하기 전인 사업시행 전의 토지가격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학교교지의 조성개발에 소요된 비용 역시 국가 등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학교교지 취득대금이 그 증가된 효용가치가 배제된 해당 토지의 취득가격에 그 학교교지의 조성비용을 더한 금액, 즉 조성원가 상당액으로 해석된다 하더라도 이로써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어 사업시행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공공용지의 귀속은 사업주체의 재산권을 박탈제한하는 수용이 아니라 공공용지의 소유관계를 정하여 사업주체의 지위를 장래를 향하여 획일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본문에 따른 학교교지의 소유권 귀속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수용에 해당하지 않고,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단서가 수용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라) 헌법재판소도 2021. 4. 29. 2019헌바444, 2020헌바135141180(병합) 결정에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에 관하여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헌결정을 하였다.

마) 따라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단서가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법률 부칙 제2조의 위헌 여부

가) 도시개발법 제정으로 인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관련내용이 동법에 흡수됨으로써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폐지함에 따른 경과규정으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보호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건전한 시행을 도모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방법의 적정성도 인정된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성원가 기준으로 학교교지 취득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단서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는 점,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폐지하고 도시개발법을 제정한 것이 종전 법률이나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려는 목적이나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법률 부칙 제2조의 취지와 입법 목적, 사회실정, 도시개발법의 제정이유나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법률 부칙 제2조는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법익균형성도 갖추었다고 볼 것이므로, 비례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나) 도시계획결정 이후 구체적인 사업 시행 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법률 시행 이후 도시계획결정이 이루어져 같은 시기에 사업을 시행하게 된 다른 사업자들과 사이에 학교용지 등 취득대금산정에 관하여 불균형한 결과가 초래된다 하더라도 이는 법 개정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당연한 결과로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집행절차방법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 재정비 과정에서 법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법과 신법의 적용기준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점, 이에 따라 법률 폐지 당시 도시계획결정 여부를 기준으로 도시계획결정이 된 사업과 되지 않은 사업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본질에 비추어 결코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이미 계획이 수립된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그 후 경제사정 변화 등에 따라 제정 및 개정된 학교용지법이나 도시개발법의 관련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는 점,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폐지하고 도시개발법을 제정한 것이 종전 법률이나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려는 목적이나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입법자가 그 충돌하는 가치를 형량하는 데 평등원칙 등 헌법규정에 위반하여 입법재량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법률 부칙 제2조가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완, 판사 배용준, 판사 정승규